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 정 2012. 2. 15. 고시 제2012- 45호
일부개정 2014. 2. 11. 고시 제2014- 16호
일부개정 2017. 1. 2. 고시 제2016-128호
일부개정 2017. 1. 19. 고시 제2017- 4호
일부개정 2021. 10. 8. 고시 제2021-117호
일부개정 2026. 6. 5. 고시 제2026- 5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양성과정별 평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기관)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평가횟수) 양성과정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평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로 별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6조(시험문제) 시험문제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서 선정·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합격 결정 기준) ① 양성과정별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검토 및 출제
2. 출제된 시험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실시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의 처리) ① 시험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답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최종답안은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2일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자의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응시자가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2. 6.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시험과목(제5조 관련)

과정별	시험과목	평가방향	양성과정 교육과목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로 현대인들의 질환의 원인인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해결방안으로 예방정신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방법에 대한 습득 정도의 평가와 산림환경과 건강심리학을 연계한 산림 구성요소를 활용한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자원으로서 산림의 휴양기능 이해, 수목생리학, 산림내의 약용자원의 이해, 산림경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산림과 질병의 관계 및 산림 자원의 치유기전을 이해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산림치유 기획·관리	산림치유 활동 운영 조직을 이해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평가·홍보 및 마케팅의 전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습득과 산림치유지도사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	조직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산림치유리더십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전문가로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능력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평가	산림치유 수요조사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 프로그램 평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보건학 개념을 이해하고,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습득하며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 환경성 질환과 생활습관성 질환을 이해하여 산림치유 대상에 적용가능한 검사방법과 측정방법을 체득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의 치유적 효과를 의학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산림자원을 치유를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습득과 식물의 치유적 효과 뿐 아니라 산림기후의 이해 및 산림치유에의 적용방법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산림치유 기획·관리	산림치유 활동의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와 관련된 법규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산림치유 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활용법을 이해하고, 숲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산림치유 시설 계 획 안전교육 및 안전관 리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활동의 시연과 실행에 대한 이해와 기본지식을 평가	산림치유 레크리 에이션 산림스포츠의 이해 (운동생리학 포함) 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지도 응급처치